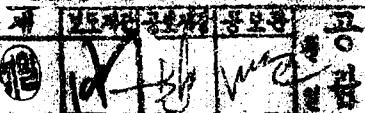


제 1345 호

1987. 2. 26.



책임인: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전화번호: 731-6111 ~ 3
 주 소: 서울특별시 종합방간실
 전화번호: 735-3337

시 보

차 래

◎ 공문서류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용지침 지침 3

◎ 조례

- 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윤위피해회동 아파트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에 관한 조례 6
 제 2145 호: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징수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 징 조례) 7
 제 2146 호: 서울특별시립 보건소수가 조례증 개정조례 7

(이번재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규칙

제 2157 호 :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8
제 2158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령 개정규칙.....	8
제 2159 호 :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10

◎ 고사

제 107 호 :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사격표 및 연동가격고시.....	18
---	----

◎ 사례

제 1345 호 시

보 1987. 2. 20. 19-3

공문시행

“뜻모아 하나로, 헌모아 세세로”

관 인 생 약
서 울 특 별 시

전형 30241-235

(731-6472)

1987. 2. 20.

수 신 : 수신처 첨조

제 목 :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
용지침 시달

1. 전설부 보행 30241-2110 (87.2.6) 호와 관련임.
2. '86.11.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일정화 및 그 운용지침을 법령과 같이 시
달하니, 각 보상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첨 부 :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판 01, 서화 01-67, 서구 01-17, 서사 01-5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문증지침

1. 제 4 조 제 2 항의 사실은 사용개선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도 당초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상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지급토록 한 규정이므로 1 월 치의 경우라도 평가 후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명일 경우에는 평가 후 1년이내에 동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든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 6 조의 2 제 3 항의 사실상의 사도라함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개설한 토착을 말하며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할 것으로서 도로가 된 경우나 도시계획도로(일단의 토지에 대한 핵심 변경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할 경우에는 도로의 개설자, 편익여부, 도시계획법상의 핵심 변경허가 등 제반사항을 명

확히 파악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잘못 적용으로 피해를 입는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비교하여 이중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한 것임으로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등 거래사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것보다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동조 제 5 항의 주거비는 경제기획원장 권이 조사발표하는 가족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자 출비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주거비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기간동안의 월세금으로 지급하는 척기이므로 반드시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놓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p>대한 주거대책비 (제 30 조의 2) 만 지급하여야 한다.</p> <p>4. 제 12조제 6항 및 제 7항의 구 정은 영전시설 평가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제 6항은 영전내의 시 설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 이며 제 7항은 방조제등 영전외곽 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제방, 석축 등의 설치비용은 실제로 영전의 토 지에 확체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평 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설은 보상해 삼아 되지 아니하여 그 시 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영전토지의 1/4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전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동구 적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의 형상,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 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p> <p>5. 제 19조제 3항의 규정은 제 2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 또는 가금 이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 또는 가 금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 에 (예: 개의 사육등) 등장에서 일 일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 2항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와 유 사한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제 2항의 애에 준 하여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6. 제 22조의 광업전외 소멸에 대한 평 가의 기준 및 방법은 광업관제법령에 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 업원의 보상평가를 수산업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것과 마찬 가지로 광업관제법령이 정한바에 따 르도록 한 것이므로 어업권보상평 가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광업법령 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p> <p>7. 제 24조 2항의 영업의 폐지중 제 3호의 경우는 제 1,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조업, 계조업 등 과 같이 통상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 는 경우를 말하니 대중음식점이나 다방과 같이 건물이나 템파하역 영 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은 제 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당초의 영업시설 보다 더 좋게 활용으로서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하여야 한다.</p> <p>8. 제 24조제 3항은 일부폐지률 인정하 는 경우로서 영업대상구역이 관제 령으로 한정된 영업으로서 그 일 부구역이 축소되었을 때에 그 보상액 은 영업의 성격에 따라 면적, 이 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축소된 영업 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p> <p>9. 제 20조의 2의 세입자에 대한 주 거대책비의 지급은 공공사업의 인 가, 허가등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저장물등을 철거할 수 있는 공고 고시등이 있는날 현재 실계로 1 개월이상 거주한자로서 보상신청 현 제까지 거주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조 사발표하는 도시근토자 평균가지지 율비율 기준으로 하되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

19-6 제 1345 호 시

보 1987. 2. 20

10. 제 30 조의 3 휴직 또는 실직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사실판에는 봉급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1. 부칙 제 2 항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86. 11. 29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던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 5 조의 7 세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30 %를 유보한 경우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0조 제 5 항의 주거비와 제 30 조의 2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체비는 86. 11. 29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사비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물철거 또는 이사를 할 때 지급할 수 있으며 제 30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휴직 또는 실직보상은 영업등이 휴업 또는 폐업시에 지급할 수 있다.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 등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 등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올림픽경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 등의 건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면제대상) 서울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기부금입찰제로 분양 취득할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조 (면제신청 등) 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영으로 파세 면제할 수 있다.
② 꾸쟁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
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은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기부금 입찰제로 분양한 아
파트를 취득하였거나 추후 후 등
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시
행일 현재 취득 또는 등기한 것
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정수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5 호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
정수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정수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내성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6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2항 단서중 "통합기술시험연구소
를 "보건환경연구소"로 한다.

19-8 제 1345 호 시

제 2 조 제 2 항 별표중 구문란 제 2 호
(먹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의 비고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숙박업소를 통한 콘돔 보급수수료는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인)

◎ 서울특별시 규칙 제 2157 호

서울특별시경찰서 조직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경찰서 조직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사무분장) 제 1 항 (별표 1)
수사과 수사계 10호 및 11호를 삭제한다.

제 4 조 (사무분장) 제 1 항 (별표 1)
수사과 형사계 15호, 16호 및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우범자관찰 및 자료관리

보 1987. 2. 20

16.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17. 학원, 노사동 집단범죄 및 유인물 사법의 수배, 검거, 조사, 신병 처리

부 칙 (1987. 2.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증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인)

◎ 서울특별시 규칙 제 2158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공보관) 제 2 항 제 1 호 “타”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 목을 삭제하고 “타” 목 내지 “자” 목을 “마” 목 내지 “아” 목으로 한다.

타. 광고영화 검열

제 7 조 (시경개발담당관) 제 2 항 제 2 호 “사”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구대책 총괄조정

제 8 조 (법무담당관) 제 2 항 제 1 호, “아” 목을 “자” 목으로 하고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아. 행정심판시민자리에 관한 사항 제 16조(행정과) 제 2 항제 2호 “사”목 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사. 행정서사 및 부동산증개업지도감독 제 22조(세정과) 제 2 항제 1호 “마”목 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마. 구세무행정의 전반적 지도 동조 동항제 2호 “가”목 및 “다”목 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p> <p>가. 이의신청 심의결정</p> <p>다.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운영 동조 동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평가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승급설정 및 수정계획총괄 나. 건물의 종별 설정과 수정 다. 부동산 과세시기표준액 승인 및 시가조사 리.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부녀 설치시기조사 마. 차량, 중기 및 항공기 시가 조사 및 표표결정 바. 도축세 과표업무 사.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운영 <p>제 23조(세무지도과) 제 2 항제 2호 “마”목을 삭제한다.</p> <p>제 25조(보건위생과) 제 2 항제 1호 “나”목을 삭제하고, “라”목 내지 “마”목을 “다”목 내지 “마”목 으로 하고,</p> <p>동조 동항제 2호 “라”목을 삭제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목 내지 “사”목을 “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여</p> <p>바. 영양사 및 조리사의 지도감독 동조 동항제 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바. 속박업소, 목욕장업소, 수영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유기장업소, 세탁업 소, 위생관련업체업소, 위생처리업소, 수 거리체계조업소, 세척제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소 및 장난감제조업소 에 대한 구행장지도감독</p> <p>동조 동항제 4호 “바”목을 삭제한다.</p> <p>제 27조(사회과) 제 2 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p> <p>1. 사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시민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과 종합조성 나. 범인 및 시설(양노, 강매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인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다. 사회복지 사업종사자 지도감독 라. 부랑인(성인남자) 단속 수용 업무지도감독 마. 행여 사망자 처리업무 바. 묘지 및 화장에 관한 사항 사. 장묘사업소 지도감독 아. 장의제도(장의사, 장의식장) 업무 자. 파내 다른해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p>동조 동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구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세민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나.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다. 영세민 지원이주 업무 라. 이웃돕기 기금관리 운영에 관 한 사항
---	--

19-10 제 1345호 시

보 1987. 2. 20

<p>제 29 조 (부녀청소년과) 제 2 항 제 1 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바. 산하사업소 지도감독 제 32 조 (농축과) 제 2 항 제 1 호 “다” “라” “아” “차” 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고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제외) 의 지도 라. 농업생산 (전작 및 단작에 관 한 사항) 및 장려계획의 수립 아.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 자. 수산증식 및 수산제조에 관한 사항 동조 동향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 축산계 가.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나. 사로수집 및 물품관리 다. 축산물 수급조절 및 축산물 도매시장 지도 라. 축산업, 종축업, 무활어, 인공수정 소의 허가 및 등록과 지도감독 마. 낙농지도 및 우유소비에 관한 사항 바. 축산단체 (지역축협등) 지도 사. 가축 통제조사 자. 사양하는 여우 및 조류의 수 입 추천업무 동조 동향 제 3 호 “나” 목 및 “사”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 및 위생관리</p>	<p>사. 수의사업부 및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제 34 조 (도시계획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을 삭제하고 “다” 목 내지 “마” 목을 “나” 목 내지 “라” 목으로 하고, 동조동향 제 2 호 “나” 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나. 토지이용 계획수립 및 조정 동조동향 제 3 호 “기” 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가. 지역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및 조정 제 36 조 (구회정리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나. 구회정리사업 예산총괄 조정 제 37 조 (재개발과) 제 2 항 제 4 호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심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즉 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총괄 제 39 조 (건설행정과) 제 2 항 제 1 호 “가” “나” “라” 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고, “사” “차” 목을 삭제하고 “아” 목 내지 “카” 목을 “사” 목 내 지 “자” 목으로 하며 가. 국소관 행정, 예산의 조정통제 나. 전문 건설업자의 지도육성 및 감독 라. 전설자재시험소 및 전설자재사 업소 지도감독 동조동향 제 2 호 “기” 목을 삭제하 고 “나” 목 내지 “라” 목을 “가” 목</p>
--	---

<p>내지 “다” 목으로 한다.</p> <p>제 41조 (건축지도과) 제 2항 제 1호 “나”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라” “바” “사” 목을 삭제하고 “라” 목내지 “아” 목을 “다” 목내지 “마” 목으로 하며,</p> <p>나.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사</p> <p>동조동향 제 2호 “라” 목 및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라. 건축물 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p> <p>마. 건축상 세도운영</p> <p>동조동향 제 3호 “아” 목 및 “자”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아.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지도감독자. 일반지구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 시설물의 총괄</p> <p>동조동향 제 4호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영상비 예산 (산하기관 총괄) 총괄</p> <p>제 43조 (주택개량과) 제 2항 제 1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의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p> <p>동조동향 제 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p> <p>2. 개량 1계 (한강이남지역 업무)</p> <p>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p> <p>나. 무허가건물 양성화 지도감독</p> <p>다.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p>	<p>라.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마. 기타 불량주택 (무허가 건물지 역 등) 재개발을 위한 특수사업 바. 재개발구역 관리 체분제한 및 전축계획 수립과 인가 및 지도 감독</p> <p>사. 건축공사 시공 지도감독 및 점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p> <p>아. 환지 저지축량 및 지구분할 축량</p> <p>자. 환지 확정을 위한 축량 및 환지 확장 철판</p> <p>차.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p> <p>카. 새개발사업 지구내 행위 환화 업무</p> <p>타.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의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총괄</p> <p>동조동향 제 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p> <p>3. 새 땅 1계 (한강이북지역 업무)</p> <p>동조동향 제 2호 “기” 목내지 “카” 목과 동일하고</p> <p>동조동향 제 4호 “바” 목을 삭제하고 “사” 목내지 “아” 목을 “바” 목내지 “사” 목으로 한다.</p> <p>제 45조 (환경과) 제 2항 제 1호 “라” 목 및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지도감독</p> <p>바. 공해방지 시설업법에 관한 사항</p> <p>동조동향 제 2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산업체 기관 처리업에 관한 사항</p> <p>제 46조의 2 (녹지과) 제 2항 제 2호 “카”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19-12 제 1345 호 시

보 1987.2.20

카.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 즉매,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의 충발 제 52 조 (업무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고 “아”목 및 “사”목을 신 설하여,	2호 및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수도사업 경영의 종합계획에 산총괄 및 짐사분석	1. 배수체 가. 배수 및 급수에 관한 종합계 획 수립 및 지도감독
다. 제 1 별판 청사 유지관리 및 당 직, 청중단속	나. 비상급수대책 (하천기 급수대책 포함)
바. 상수도 공체발행 및 상환 사. 상수도 총사 공무원의 연금, 의 료보험관리	다. 수압 조절과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급수차 지원등)
동조 동항 제 2 호 “나” “라” “마”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고 “아” “자” 및 “자”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라. 소배수지 및 배수관 공사업무 의 지도감독
나. 급수사용료 (공업용수 포함) 부 과징수의 지도감독	마. 배수지 운영의 지도감독 (전기 및 기계분야는 제외)
라.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등 재심신 청의 처리	바. 송배수관 품기 중심 업무
마. 부정급수 (도수) 단속계획	사. 재수변 유지관리 및 조절업무 의 지도감독
사. 수도 민원처리	아. 배관부설 유관사업에 관한 사업 자 공사대장관리 및 배관당도 정비
아. 수도요금 전산처리 업무지도 자. 위탁업무 (수도미래 접경통역) 지도감독	차.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차. 군 급수 업무처리	2. 누수방지제
동조 동항 제 3 호 “사”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가. 누수방지 및 급수시설의 보수 에 관한 사항 (공업용수 포함)
사. 국스관 업무용 자재 물품의 구입, 임대차, 운반과 용역에 관한 사항 제 53 조 (급수과) 제 2 항 제 1 호, 제	나. 송·배수관 누수의 영구분석과 누수방지 계획
	다. 노후 배급수관의 개량 (공업용 수 포함) 및 통합공사 업무의 지도 감독
	라. 기설 상수도관 (공업용수 포 함)의 이설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 원동대책 추진 및 원 인분석에 관한 사항

3. 급수장치제 가. 가압장·유저관리 및 운영지도 (전기 및 기계분야 제외) 나. 가압시설의 설치 및 통합개량 계획(기계 및 전기분야 제외) 다. 급수함, 소화栓, 풍설공용전의 설치계획 라. 위반 급수공사의 단속지도 마. 급수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바. 양수기실의 설치, 개량 및 유 저관리 지도 사. 급수협의에 관한 사항 제 54 조 (수원기전과) 제 2 항 제 1 호 “라”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고, 라. 상수도사업용 전기 기체설비의 경전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바. 양수기의 수급계획 및 기술에 관 한 업무(공업용 수도 포함)	동조 동향 제 3 호 “과”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원지 방호시설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제 57 조 (미방위과) 제 2 항 제 1 호 “미”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 복무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제 61 조 (경무과) 제 2 항 제 1 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경무제 가. 과내 직원의 복무 및 인사 나. 경찰국 보안업무 및 산하 관 서 지도감독 다. 복무규율과 직원 근태 라. 경찰의전, 형사 및 회의 마. 당직 및 감독출서 지정 바. 경찰국의 사무 인계인수 사. 경찰국 행사방호 및 신하관서 방호지도 아. 경무협회 및 후생복지 자. 국민저축조합 운영 관리 차. 치안일자 및 경찰사 기록관리 카. 고용직 및 잡금직 지도감독 타. 기마대 관리운영 파. 자체경비업무 및 자체경비대 운영 하. 자체 민방위대 관리 거. 해외 사사 여행업무 너. 집무검열 및 환경미화 어.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62 조 (교통과) 제 2 항 제 1 호 및 동

19-14 제 1345 호 시

보 1987.2.20

<p>조동항 제 2호 률 다음과 같이 하고</p> <p>1. 교통계 가. 과내 직원 복무 및 일사 나. 교통경찰 (교통순시원 포함) 에 관한 계획, 지도, 교양 다. 교통 순시원 시험관리, 임용제 청 등 운영 라. 전인차량 접종관리소 운영 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바. 제 2 담당관 소관 업무 등 타과 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2. 교통안전제 가. 교통규제 업무 나. 교통 사법 단속 계획과 지도 다. 법령위반 차량, 행정처분 집 행 라. 민간 교통경찰대 (모범운전사) 운영관리 마. 교통체계 개선 (T.S.M) 업 무 중 교통 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 바. 운수행정 협조업무 사. 교통사고 방지책 아. 교통사고 원인과 통계분석 자. 교통안전지도 제작 차. 교통 장애물에 대한 지도 단속 키. 안전 운전관리자 지도 타. 교통 관리 센터 운영 파. 교통 민원 신고센터 운영 하. 불법 주.정차 단속관 운영 동조 동항 제 3호 "라" 률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라. 전자신호 전산실 운영</p>	<p>동조 동항 제 4호 "라" 률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VTR 단속반 운영</p> <p>제 65조 (경비과) 제 1 항을 다음과 개정하고</p> <p>(1) 경비과에 경비 1 계, 경비 2 계와 경호제를 두고 계장은 경찰 또 는 경감으로 보한다.</p> <p>동조 제 2 항 제 1호 "마" 률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고</p> <p>마. 대체로 진압</p> <p>동조 제 2 항 제 4호 기마대 이하 "가" 률내지 "다" 률을 삭제한다.</p> <p>제 66조 (작전과) 제 2 항제 1호 "바" 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하" 리를 신설하며</p> <p>바. 5 분대기 부대 및 후속 중 부대, 후속지원대 운영지도 하. 검문소 설치 및 운영지도 거. 전시 수도권 주민통제</p> <p>동조동항 제 2호 "아" "자" 및 "차" 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아. 규율대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자. 복무규율 위반자 지도단속 및 교양 차. 전부경찰 순경관련 사건조사처리</p> <p>제 67조 (보안과) 제 2 항제 1호 "바" 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거" "너" "허" "러" 및 "며" 률을 신설하며</p>
---	--

<p>바. 총포 화약류 사격장 설치등 인 허가와 지도단속</p> <p>거. 경호대의 안전활동계획 수립 시 평 및 지도단속</p> <p>너. 폭발물 처리 전답반 운영 더. 고압가스 및 유독가스 관련 업 무 협조</p> <p>라.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편허 발급</p> <p>미. 폭발물 탐지 등 안전 검측 장 비 관리</p> <p>동조동항 제2호 "차"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차. 한강순찰대 운영</p> <p>동조동항 제3호 "자" 및 "차"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자. 소년범죄 수사 및 지도</p> <p>차. 소년범죄 사료수집 분석</p> <p>제 69 조 (형사과) 제 2 항 제 2 호 "아" 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p> <p>아. 학원, 노사 등 집단범죄 및 유 인물 사법의 주체, 경지, 조사, 신 병 처리</p> <p>제 75 조 (기동대) 제 1 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p> <p>(1) 기동대에 행정계, 작전계, 장비계, 진압중대, 특별순찰대, 제 3 기동대 를 두고 계장(증대장)은 경감 또 는 경위로 보한다.</p> <p>동조제 2 항 제 1 호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아. 영창관리 및 수감자 안전보호 동조 제 2 항 제 7 호 선경 기울대 이하를 삭제한다.</p> <p>제 76 조 (중앙청 경비대)를 제 76 조 (정부 종합청사 경비대)로 개정 하고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정부종합청사 경비대에 행정계와 경비소대 및 국무총리 공관 경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차관대를 둔다. 파견대장 및 계장(소대장) 은 경장 또는 경위로 보한다.</p> <p>(2) 중앙청 경비대의 제별 분장사 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중 개정 규칙을 아래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印</p> <p>◎ 서울특별시규칙제 2159 호</p> <p>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구칙증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 (시민봉사실) 제 2 항 제 1 호 "나"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나. 구, 동밀원 업무의 개선지도</p>
--	--

19-16 제1345호 시

보 1987.2.26

동조 동향 제2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전주율 팔리대장 팔리 및 제증명 발급 제3조(총두과) 제2항 제1호 "키"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카. 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지도 감독 동조 동향 제3호 "사"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거" 및 "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행정서 사례가 및 부동산 증개업 허가 지도감독 거. 경화통일정책 자문회의 관리업무 네. 동행정 관련문서 및 회의통계 제4조(기획감사과) 제2항 제1호 "사" 목을 삭제하고 "아" 목을 "사" 목으로 하고 동조 동향 제3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성 모니터 운영 및 구행경여론 정위 제6조(민방위과) 제2항 제1호 "자"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타" "파" "하" "거" "너" 및 "데"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 민방위대의 동원 및 지원관리 타.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파.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하.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음악조차 영행 및 이에 따른 손실 보상협의 거. 민방위대의 신고방 운영관리 네. 팔내 민방위 기술자원 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지휘감독 마. 팔내 직장민방위 대원의 명부 작성관리 동조 동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교육훈련제 가. 민방위 사례회의 주민의 통계 및 소산 수송통제 나.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계획수립 실시 라. 민방위교육 보조자료 연구발전 마.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바. 홍보 기자재관리 사. 화생방 오염의 방지측정 및 재처리 등의 장비관리 운영 아. 민방공 세부시행 계획수립 및 실시 자. 통화 및 음향설계 통제 동조 동향 제3호 "다"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일부광재 재증명 발급 제11조(위생과) 제2항 제2호 "가" 및 "사" 목을 다음과 같
--	---

<p>이 개정한다.</p> <p>가. 속박업소, 목욕장업소, 수영장업소, 미·미용업소, 유기장업소, 세탁업소, 위생 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수처리제 제조업소, 세척제 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장난감제조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사,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p> <p>제 12조(산업과) 제 2 항 제 2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상업용 임대건물에 관한 업무</p> <p>제 15조(주택과) 제 2 항 제 1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사.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p> <p>동조 동항 제 2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사.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립된 공공주택관리, 응자금 회수</p> <p>제 16조(도시경비과) 제 2 항 제 1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p> <p>자. 도심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p> <p>동조 동항 제 2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자. 이륜소형자동차 업무 지도감독</p> <p>제 17조(건축과) 제 2 항 제 1 호 “마”“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마. 일반지구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p> <p>사. 축대의 안전도 조사</p>	<p>제 18조(공원녹지과) 제 2 항 제 2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하. 임야 및 개발제한 구역내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p> <p>제 19조(건설관리과) 제 2 항 제 1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가. 풍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계방)의 사용허가와 관리</p> <p>나. 풍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계방)의 활용로 부과징수</p> <p>제 20조(토목과) 제 2 항 제 1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사.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등 제 2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자.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의 허가</p> <p>동조 동항 제 3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 하수도 체육장지 관리</p> <p>제 21조(수도관리과) 제 2 항 제 1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자. 금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처분</p> <p>동조 동항 제 2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타. 금수사용료 납부월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p> <p>동조 동항 제 3 호 “라”목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처벌 및 가산금의 징정</p>
--	--

19-18 제 1345 호 시

보 1987.2.20

<p>마.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수납부 관리 (소인등)</p> <p>바. 하수처리장비 계수입금의 체납자 해수증지 처분 및 재산압류</p> <p>제 22 조 (수도공사과) 제 2 항 제 2 호[※]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바. 소화전 설치공사</p>	<p>에 관한 규정 (농수산부 고시 제 85- 47 호, 85.8.22)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의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표 및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7.2.20</p> <p>서울특별시장</p>

부 칙 (1987.2.20)

이 규칙은 반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107 호

쇠고기, 돼지고기연동가격표 및 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

1.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표 :

별첨

2.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 (정육 500 그램당) 2,900 원

돼지고기 (정육 500 그램당) 1,600 원

3. 시행 일

1987.2.23.부터

쇠고기연동가격표

돼지고기연동가격표

지육경락가격 (지육키로당)	적용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지육경락가격 (지육키로당)	적용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2,600 원	2,250 원	1,700 원	1,350 원
2,700	2,350	1,750	1,400
2,800	2,400	1,800	1,450
2,900	2,450	1,850	1,500
3,000	2,550	1,900	1,500
3,100	2,600	1,950	1,550
3,200	2,700		
3,300	2,750		
3,400	2,800		
3,500	2,900		

제 1345 호 시

보 1987. 2. 20 19-19

사
례

◎ 1987년 2월 19일자

령 제 37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홍승희	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	의약과	지방약사

령 제 38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전창섭	강서구보건소	서대문방원	지방약사

◎ 1987년 2월 21일자

령 제 39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박환수	서울특별시 경찰국 과장 (87.2.21~87.6.30)	운수 2과	지방기계기사
박종화	운수 2과 과장 해제	김포수원지사무소	지방기계기사 보

서 울 특 별 시 장